

#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40호
- 나. 제 안 자 : 박기열 의원(찬성자 45명)
- 다. 제안일자 : 2021년 2월 4일
- 라.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 2. 제안이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기업 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추가 함(안 제8조제4항).

나. 시장이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개정된 법률을 고려하여 다음의 항목을 추가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부터 제6호).

-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
-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
-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0. 12. 8.)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여성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됨.

### 나. 서울시 여성기업 현황 및 지원 정책의 필요성

- 여성기업은 회사대표로登記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이거나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조합원 수 과반이 여성인 협동조합을 경영하는 기업 등을 말함.<sup>1)</sup>

---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登記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登記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서울시 여성기업은 2018년 현재 전체 사업체의 34.5%인 26만 8천 여개로 2010년 23만여개 대비 16.3% 증가했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8%로 경기도에 이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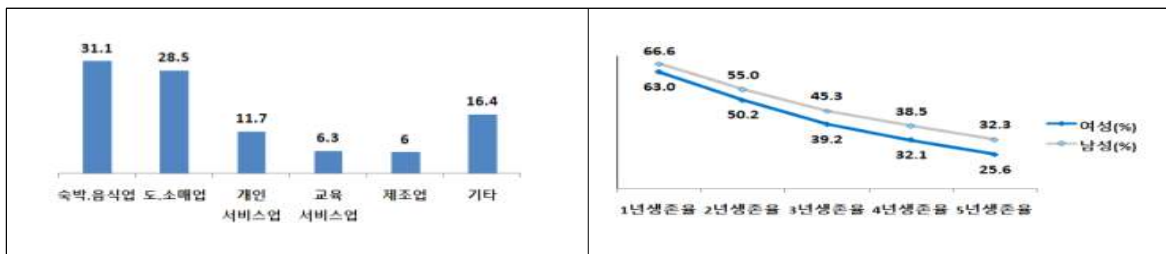
### <서울시 여성기업 현황>

서울시 여성기업 사업체 수 (단위 : 개, %)				전국 내 시도별 여성기업 사업체 수 비중 (단위 : %)
연도	여성기업	전체기업	여성기업 비중	
2010	230,443	693,021	33.2	
2011	238,778	713,979	33.4	
2012	249,868	740,129	33.7	
2013	252,069	742,590	33.9	
2014	261,211	768,725	34.0	
2015	263,234	775,802	33.9	
2016	264,996	775,348	34.2	
2017	267,814	777,046	34.4	
2018	268,069	776,357	34.5	

※ 자료 : 통계분석과 실태조사에 기반한 서울시 여성기업 특성(서울연구원(2020)).

- 그러나 여성기업 대부분은 저위기술<sup>2)</sup>의 영세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생계형 업종에 편중되어 있음.
- 전체 여성기업 사업체의 89.2%가 소상공인(131만개)이고, 주로 숙박·음식업(31.1%), 도·소매업(28.5%) 등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 <여성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과 생존율>



※ 자료 : 2019 여성기업백서(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 저위기술 : OECD가 기술수준 정도에 따라 수출상품을 4가지(고위기술,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저위기술)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이 낮은 저위기술 분야는 음식료품, 담배, 섬유, 의류, 인쇄출판 등임.

- 지식기반산업 사업체와 제조업 기술 수준이 낮고 매출액은 전체 기업의 9.4%(444조원)에 불과함.
- 여성기업의 애로점은 주로 ▶여성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여성기업 운영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여성기업 활동에 부적절한 정책 운영 등에 기인하고 있음.
- 그러나 여성기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양질의 여성 노동력 활용을 통해 경제 및 창업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성기업에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여성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정책들을 개선하여 여성기업을 보호·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단순히 여성기업의 비중을 늘리기보다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시는 매년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창업활성화, 역량강화지원, 판로지원확대 3대 분야에 2,239억 4천 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참고자료).

#### 다.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 안 제8조는 여성기업지원의 특성을 고려해 여성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sup>3)</sup>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시행·평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임.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여성 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등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동가, ▶시의원, ▶여성기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위촉하고 있음.
- 여성기업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원의 성비 구성 균형을 맞춰 여성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입법 조치는 바람직할 것임.
- 다만, 서울시는 조례 제정(2017. 1. 5.) 이후 현재까지 해당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위촉직 위원의 성비 구성 비율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정책적 실익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

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여성기업에 대한 연수 및 지도 지원(안 제9조)

- 안 제9조는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디지털 역량강화 등에 대한 연수·지도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을 추가하여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u>
<신설>	5. <u>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u>
<신설>	6. <u>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u>
4. <u>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u>	7. <u>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여성경제인---</u> ---
5. (생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 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경제모델로 부상하는 비대면 기반 디지털 산업 분야에 대한 연수·지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여성경제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현대 사회가 디지털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교육지원은 여성경제인의 대응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여성기업이 겪고 있는 판로개척, 인력확보, 경영 관련 어려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임.
-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연수 및 지도사업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참고자료】 2020년 서울시 여성기업 지원계획 중 3대 분야 8개 사업

추진방향

-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 안정화 지원
- 여성기업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한 여성기업의 역량강화 및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추진
-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 및 정책 홍보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추진분야 및 과제 : 3대 분야 8개 사업

추진분야	추진과제	소관 부서	예산 (단위:백만원)
계			223,945
창업 활성화	①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② 여성창업플라자 운영 ③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운영	여성정책 담당관	2,646
	④ 창업보육시설 입주 가산점 부여	투자창업과 산업거점 조성반 경제정책과	
역량강화 지원	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10,250
	⑥ 여성기업 관련 단체 지원	경제정책과	
판로 지원 확대	⑦ 공공구매 확대 및 홍보지원 ⑧ 창업보육센터별 판로지원 (창업분야포함된사항)	경제정책과	211,049